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3
----------	--------

제출년월일 : 2020.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주민자치회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 주도의 참여의식 고양 및 주민자치 활성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의견을 수렴한 주민자치회 확대(안 제3조)
- 나.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확대(안 제7조)
- 다. 주민자치회 감사 주기, 결과 외부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안 제15조)
- 라. 주민자치회 회의 및 주민총회의 탄력적 운영(안 제18조 ~ 19조)
- 마. 온라인 참여여건 조성을 통한 주민참여 촉진(안 제22조)
- 바.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삭제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제29조

2) 「서울특별시 OO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개정안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0. 10. 8. ~ 10. 28. (제출된 의견 없음)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해당없음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제2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0. 11.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덕동, 용강동, 서강동, 서교동, 성산2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된 사람

3.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4.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연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 및 주민 총회에 제출하고, 동 게시판 또는 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기회의는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주민총회 개최 횟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의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운영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를 “온라인 참여 여건 조성, 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위원회 해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동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u>공덕동, 용강동, 서강동, 서교동, 성산2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7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주민자치교육 이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3조(설치) ① ----- -----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위원의 자격)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p> <p>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p> <p>1. <u>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u></p> <p>2. <u>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u></p> <p>3.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u>피선거권이 없는 사람</u></p>

제15조(감사) ① (생략)

② 주민자치회는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단서 신설>

② ~ ④ (생략)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단서 신설>

⑥ (생략)

제19조(주민총회) ① (생략)

②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

4.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15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자치회는 연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 및 주민총회에 제출하고, 동 게시판 또는 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 ① -----

----- . 다만, 정기회의는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주민총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

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③ ~ ⑥ (생략)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지원 및 공간 지원, 그 밖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⑤ (생략)

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결을 거쳐 주민총회 개최 횟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운영 등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온라인 참여 여건 조성, 그 -----.

④·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과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간사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10조에 따른 예상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전 일(☎ 3153-8312)